<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응 관련 간담회

○ 일시 : 2008년 11월 27일(목)

○ 장소 : 문화연대

○ 참석 :

<진행 순서>

1. 참석자 확인
2.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현황 공유
3.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공유
4. 대응방안 논의
5. 이후 일정

※ 첨부자료 목록

1. 문화연대 성명서 _____ 2
2.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 성명서 _____ 4
3.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응계획 초안 _____ 6
4. 정부 및 국회 입법과정 _____ 14

※ 별첨문서

1.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 <청소년보호법>
3.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 의견서

첨부자료1. 문화연대 성명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청보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법률 제안 취지와는 달리,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기존 <청소년보호법>이 가졌던 문제점은 전혀 개선하지 못한 채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입법예고 이전에 파기되는 것이 옳다.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 더욱 강화하는 <청보법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가 준비 중인 <청보법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하되 매체물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미 입법예고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이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짐으로써 타법률 및 정책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청소년' 개념이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임과 동시에 청소년을 보호와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정부는 청소년 정책을 '가족 및 보육'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설치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준비해왔다. 청소년 정책을 기존의 가족 및 보육정책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정책의 방향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관점은 법률개정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 기준

<청보법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과 같은 기준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구실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권력이나 자본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문화예술작품과 표현물 등에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이라는 딱지가 붙을 거란 건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통'의 개념을 '매개'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정보통신, 언론, 방송, 스포츠 등 모든 문화적 활동에까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을 통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이런 조항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해프닝처럼 결국 국민들의 생각까지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까지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기존의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광고와 선전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즉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나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정보통신망'에서 광고나 선전이 불가능하다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모호한 규정과 함께 결합하여 사회참여적인 콘텐츠,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가 온/오프라인에 아예 게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 방송프로그램 편성 개입 등
청소년활동 및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의 근거가 될 <청보법개정안>

<청보법개정안>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요소요소의 독소조항들은 청소년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청보법개정안>은 이러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선 <청보법개정안>은 방송법의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청보법개정안>을 근거로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셧다운제'의 도입 또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겠다는 <청보법개정안>의 내용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크다. 즉 온라인 게임만(!), 그것도 게임의 내용이 아닌 시간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아예 위헌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의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이번 <청보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전면화하는 근거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번 <청보법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민주적/반문화적 법률이다. <청보법개정안>을 즉각 파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27일(목) / 문화연대(직인생략)

첨부자료2.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 성명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철회하라!

-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안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거부할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반인권·반문화·반산업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복지부의 이번 전면개정안은 ▶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법**, ▶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반문화법**, ▶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산업법**, ▶ 기존 법률의 규제에 또다른 규제를 부가하는 **이중규제법**, ▶ 복지부의 규제관할권의 무한확장을 표방하는 **부처이기주의법**, ▶ 개별 부처가 졸속적·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방통행법**이다.

▶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표방함에도 문화콘텐츠 및 각종 매체의 이용 제한과 차단에 중점을 두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표현하고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인권법으로 명명해도 모자람이 없다.

▶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반문화법**,
개정안은 영화, 방송, 게임, 공연, 연극, 출판, 인터넷, 그리고 신문 등의 언론매체까지 거의 모든 문화콘텐츠와 매체를 "청소년에게 위험·유해한 매체물"로 결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문화 그 자체를 '위험'하고 '유해'한 것으로 이해하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는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해 무한한 반문화적 정서와 혐오감에 근거해 작성된 반문화법이 아닐 수 없다.

▶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산업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규제제도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추가적인 이중 삼중의 부가적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확대와 관리 강화"라는 '청소년 보호'의 명분을 방패삼아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전반의 붕괴를 불러 올 수 있는 반산업적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유통'의 개념을 매개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및 정보통신, 언론, 방송, 광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매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실현불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범죄기사가 등장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는 발상인데, 여기에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어떠한 문화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

▶ 이중규제법, 부처이기주의법, 일방통행법

현재 영화, 음악, 공연, 출판,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언론, 방송, 광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문화산업은 기존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기존의 규제와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추가적이고도 별개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중복규제이다. 이러한 중복규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복지부의 권한 확대, 조직강화인데, 이는 명백한 부처이기주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할 타 법률과의 관계 정립, 형식적 정합성,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등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며, 관련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입법과정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아동·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며,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 개정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일차적으로 복지부의 개정안 설명회에의 불참할 것임은 물론, 문화산업 전반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1.25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

(사)영화인회의 · (사)한국게임산업협회 · (사)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 (사)한국뮤지컬협회 ·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사)한국음악산업협회 ·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

첨부자료3.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응계획 초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응계획(초안)

2008. 11. 27. 문화연대

1. 현황

○ 청소년 업무의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 이후, 이명박 정부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10/27~11/17 입법예고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념을 도입.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아직 국회에는 상정되지 않은 상황(계류의 안에 올라와 있지 않음).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기본법>에 이어 <청소년보호법>도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할 계획.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보호과)'이 작성한 법률 초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 등을 진행중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아직 입법예고 되어 있지 않음.

○ 정부 및 국회 대응, 청소년/문화/법률단체 및 전문가들의 입장 발표, 시민사회 조직, 여론화 작업(온라인 및 언론) 등을 통해 입법 자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 있음. 민주주의 역행, 전 국민(특히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전면화 등을 근거로 한 대규모 입법 저지(혹은 대체 입법) 운동이 요구됨.

2. 문제점

ㄴ 신/구 대조표 형식, 쟁점을 부각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할 필요.

(1)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대상 통합의 문제점

○ 청소년 업무의 이관(국가청소년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우려되었던 상황임. "아동청소년" 개념을 통해 청소년을 이전보다 더욱 보호와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의미함.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문화예술/청소년 단체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임.

<참고 : 청소년 정책 관련 정부기구의 변화>
1997년 7월 : 청소년보호법 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2005년 4월 : 문화부 청소년국과 청보위 업무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 발족

2006년 3월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2008년 2월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업무 통합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란 9세이상 2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 매체물에 대하여는 만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한편, 기본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매체물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음.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을 각각 상이한 연령기준으로 중첩되도록 정의함으로써 타법률 및 정책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만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 규정으로 기존 등급체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

(2) 통제와 규제의 전면적인 확산의 문제

○ <청보법개정안>은 영화, 방송, 게임, 출판, 공연, 연극, 온라인 콘텐츠 등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악법이 될 것임.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바.「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사.「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규정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아.「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종교·과학 분야를 제외한다)
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종교·과학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차.「출판문화 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타. 가목 내지 차목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하. 기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 또한 개정안은 '유통'의 개념을 '매개'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정보통신, 언론, 방송, 스포츠 등 모든 문화적 활동에까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음. 이는 정보통신과 문화활동에 대한 커다란 제약이 될 것임.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 **전송**,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항별·분야별 문제점

① 주관적, 자의적인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기준 : 개정

○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큼.

제10조(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아동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오남용을 조장 또는 미화하거나 **매개하는 것**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사용이나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6. 대부업 등 아동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7.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8.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위배되는 것
9. 기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위험·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은 본 조의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경우, 광고와 선전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음.

제23조(광고선전 제한) ①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광고 선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결정, 확인을 거쳐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정보통신망**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목록표는 영업적 광고목적으로 게재되거나 출판·배포·전송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서 제2조제3호 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 장소, 기타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 편성 개입 : **신설**

○ 방송법의 프로그램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방송법>과 일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이 규정을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 혹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및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음.

> 제27조(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방송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는 미취학 연령대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주당 3시간 이상,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주당 4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연령대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주당 1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중 주당 3시간 이상을 교육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1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널별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아동청소년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연령대 아동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셧다운제도'의 도입과 문화적 권리의 침해 : **신설**

○ 내용이 아닌 시간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위헌 소지도 있음.

> 제34조(게임물 제공시간 제한)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행금지(?), 보행권을 침해하는 '아동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의 지정

○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이는 기존 <청소년보호법>의 조항이 존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큼(ex. 촛불집회 장소를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

> 제47조 (아동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아동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아동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아동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⑤ 문화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유해약물의 판촉 및 후원 제한' : **신설**

○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의 판촉 및 후원을 제한하는 규정의 내용이 과도하여 문화 및 스포츠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제54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약물의 판촉 및 후원제한) 유해약물제조업자가 약물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스포츠 경기 및 e-스포츠, 사회, 문화, 음악 행사를 주최·후원하는 행위
2. 스포츠경기의 선수단을 운영하거나 선수단을 후원하는 행위
3. 본항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판촉 또는 후원활동을 할 때에도 후원자가 약물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는 사실과 제51조에 규정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⑥ 아동청소년위원회의 권한 강화

○ <청보법개정안>은 아동청소년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타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음. 또한 사실상 모든 매체물에 대한 심의를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음("각 심의기관의 아동청소년 위험·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이는 이중규제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기준으로 다른 콘텐츠를 심의하게 되어 자칫 아동청소년위원회가 '법 위의 법'을 행사하는 '최고 심의기관'이 될 우려가 큼.

제9조(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험·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위험·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심의를 하도록 각 심의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험·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위험·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각 심의기관의 아동청소년위험·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⑤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의 심의·결정, 위임 ·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타

3. 대응방향 및 목표

(1)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파기 및 입법 저지
- 청소년 인권, 문화적 권리
- 표현의 자유 침해
-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규제와 통제

(2)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인권(보호)법> 등 대체 입법 추진

(3) 반문화, 반인권, 반민주 악법 폐지와 국민 통제 강화에 반대하는 여론 확산
-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계기로 청소년과 국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문화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전면화 : 민주주의 역행,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이명박 정부 반대! -> 온라인 적극 활용

4. 대응계획

(1) 여론화 작업
- 핵심쟁점 정리, 사례수집
- 단위별 성명 발표

- 공동기자회견
- (국회)토론회
- 언론기고 : 청소년 인권, 표현의 자유, 게임문화연구 관련 등
- 표현의 자유 백서(ver.2009) 발간

(2) 정부 입법대응
- 입법예고 의견 발표
- 공청회 대응

(3) 국회 대응
- 보건복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대상 설명자료 및 의견서 배포
- 선언운동 등을 통한 국회 압박

(4) 시민사회 조직 및 문화행동
- 2차 간담회 조직
- 웹자보/뉴스레터 형태의 소식지 발간 : 3~4회 한정판으로
- 청소년 직접 문화행동
- 아고라,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문화행동
- 표현의 자유 주제로 한 (온라인) 전시 등 기획
- 팬클럽 조직

첨부자료4. 정부 및 국회 입법과정

(1) 정부입법과정

-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음. 현재 관계기관 협의단계임.
- 남은 절차별로 입장 발표 및 의견 전달,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영향을 미쳐야 함.
-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지 여부는 판단, 확인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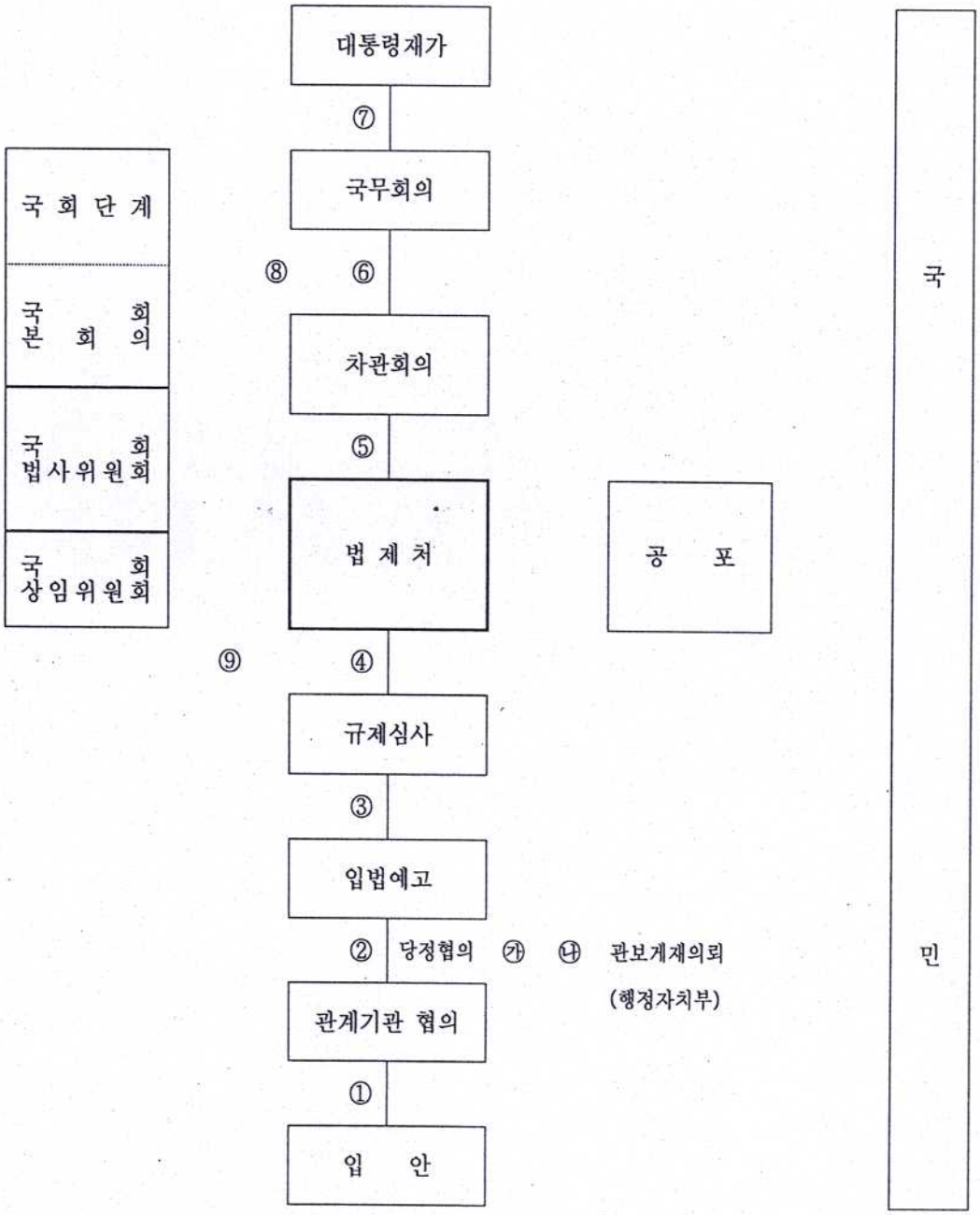

(2) 국회입법과정

- 실제 위원회 통과 이후에 본회의에서 폐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폐기 및 대체 입법 관련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 국회토론회, 공청회 개입 등 국회 활동계획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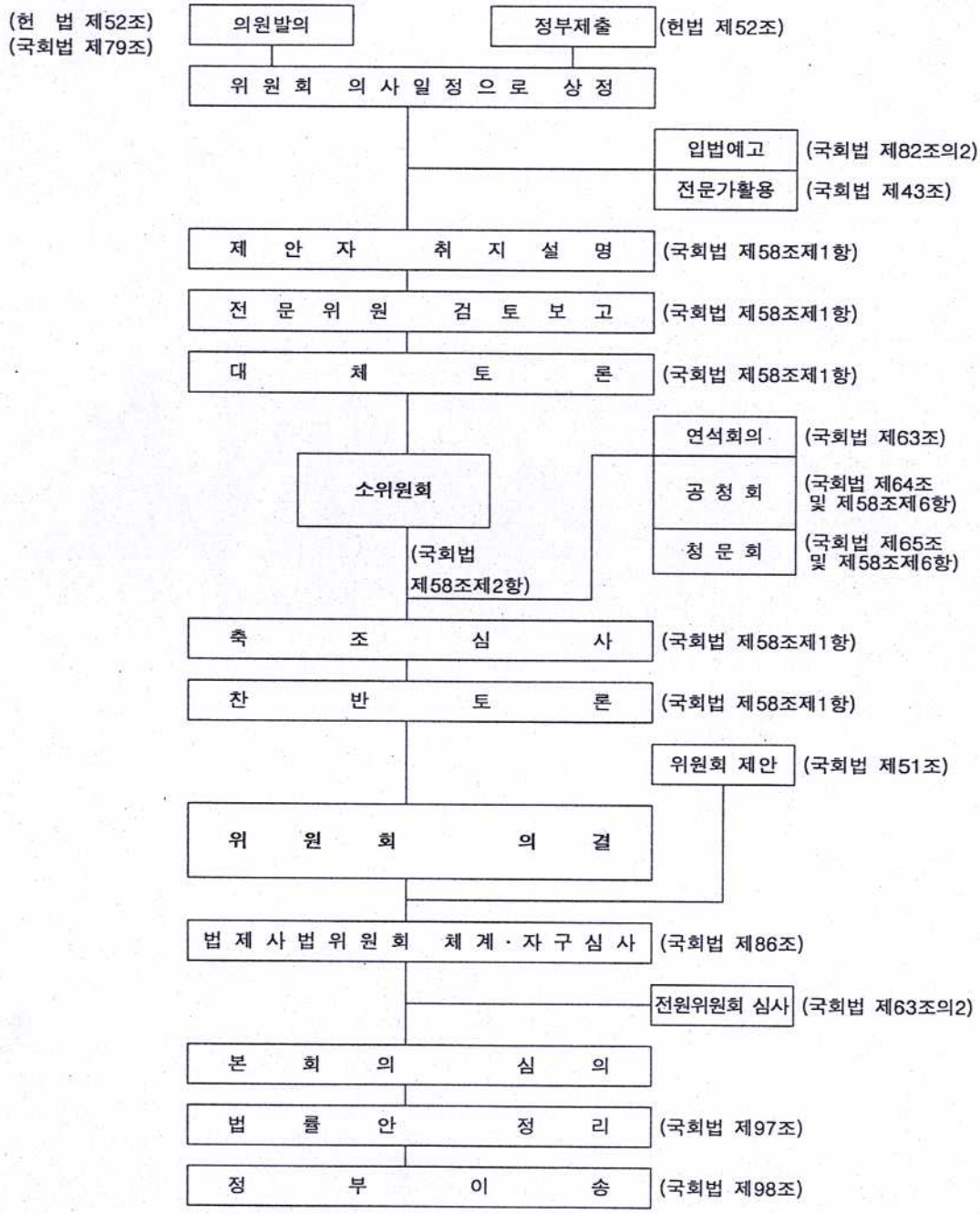
< 입법과정의 절차 >